



관세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

1. 귀 협회(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청에서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4.4.11.부터 「관세법」 제177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중계무역 물품을 "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"으로 지정*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* 「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 확대 안내 협조요청(관세국경감시과-1185, '24.3.28.)」
3. 이와 관련하여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운영방식, 수출실적 검증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, 협회(회)에서는 화주 및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불임의 변경 내용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구 분	현 행	개 선
장치기간	비축에 필요한 기간 (매 1년 단위 요건 충족 여부 검증)	1년 (요건 충족시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)
장치기간 연장신청	-	화주가 장치장소별·반입물품별 연장 신청 (중계무역 수출실적 입증 자료 첨부)
수출실적 검증기준	화주별 전체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재고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실적 30% 이상	동일 화주의 해당 보세창고 반입물품별 중계무역 물품 반입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 합계 중량 30% 이상

※ 운영기간 : 공문 시행일 이후 부터 「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전까지

불임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관한 세부 운영 방법(변경안) 1부. 끝.

관 세 청 장



수신자 (사) 한국관세물류협회, (사) 한국무역협회, 한국관세사회장

주무관

이재민

행정사무관

서주원

관세국경감시 2025. 5. 29.

과 과장

김승민

협조자

시행 관세국경감시과-1420

(2025. 5. 30.)

접수

우 35208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(둔산동)

/ www.customs.go.kr

전화번호 042-817-7901

팩스번호 042-481-7937

/ grim38317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

청렴한 당신, 행복한 국민, 신뢰받는 관세청